

산업 회보 2013/4/10 – 물고기 페디큐어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Board)는 “물고기 페디큐어”로 알려진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페디큐어는 고객들이 자신의 발을 담글 살아있는 고기가 들어 있는 족탕이나 욕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고객의 발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피부 세포를 먹습니다. “물고기 페디큐어”가 이발 및/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가된 시설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Board는 “물고기 페디큐어”가 Board의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위해, Board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목 16, 분류 9, 제12조. 건강 및 안전을 검토했습니다. “물고기 페디큐어”의 실행은 규정 979(a), 981(a) 및 980.3에 맞지 않습니다.

규정 979(a)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모든 비전기 장비는 비누나 세제로 세척하고 이후 EPA에 등록되고 입증된 살균, 살바이러스 및 살균 활동을 하는 소독제에 담귀 소독해야 한다.” Board는 각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물고기가 거의 소독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정 981(a)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고객과 직접 접촉하고 소독되지 않는 모든 장비와 지급품은 사용 후 즉시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한다.” Board는 각각 사용 후에 물고기를 폐기하기 보다 물고기가 소독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정 980.3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각 고객에게 사용한 후에, 각 비소용돌이 대야나 욕조는 청소하고 소독한다”. Board는 살아있는 물고기의 사용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발 대야나 욕조를 제대로 깨끗케 하고 소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